안산대학교	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	규정번호	3-7-12
		제정일자	2017.05.01.
		개정일자	2023.03.01.
		개정차수	4차
		소관부서	학생성공처 (장애학생지원센터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학칙 제60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의거하여「장애인차별금지·권리구제」 및 소수집단학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장애학생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장애학생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

② “소수집단학생”이라 함은 다문화가족학생, 외국인학생, 탈북민학생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신설 2023.03.01.>

제3조 삭제 <2023.03.01.>

제4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학생 교육활동·편의지원에 관한 업무
2.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학생 의견수렴 및 환류에 관한 업무
3.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학생 장학금 지원에 관한 업무
4. 대학 구성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계획수립 및 의무화 운영에 관한 업무
5.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
6. 삭제 <2023.03.01.>
7. 그 밖에 대학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장 조 직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제6조(직원) 센터에는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위원회

제1절 운영위원회

제7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8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·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센터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센터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4. 삭제 <2023.03.01.>
5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2절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

제12조(구성) ① 장애학생지원에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,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으로 8인 이내로 구성한다.

[본조신설 2023.03.01.]

제13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[본조신설 2023.03.01.]

제1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3.03.01.]

제15조(회의) ①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03.01.]

제16조(특별위원회의 기능) ①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
2.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
3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 사항

[본조신설 2023.03.01.]

제17조(심사청구) ①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[별지]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를 요청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대학은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03.01.]

제4장 보 칙

제18조(세부사항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 년 9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.